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10호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다.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바.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22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문기구)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의 양립
6. 음란물·유혹·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